KYUNGWON
COLLEGE

ID
PASSWORD
LOGIN
ID/PW 찾기

학사정보
- 학사일정
- 학칙
- 등록 / 휴학 / 복학안내
- 장학금안내
- 병사안내

학사정보
EDUCATIONAL MATTERS INFO

프로가 인정하는대학+
경원전문대학에서 시작하면
바로 프로페셔날입니다

Home > 학사정보 > 학칙

학칙

제 1장 총칙

+ 제 1조 (목적)

본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명칭)

본 대학은 경원전문대학이라 한다.

+ 제 3조 (위치)

본 대학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65번지에 둔다.

+ 제 4 조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① 본 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학과명		입학정원	학과명		입학정원
전기제어시스템과	주간	80	소방안전관리과	주간	80
	야간	40		야간	40
토목환경과	주간	80	전자정보과	주간	80
	야간	40		야간	80
건축과	주간	68	e-비즈니스과	주간	40
	야간	28		야간	40
건축설비과	주간	80	사회체육과	주간	80
	야간	40			
산업경영정보시스템과	주간	80	보 육 과	주간	120
	야간	80		야간	40
산업디자인과	주간	80	비 서 과	주간	120
				야간	40
컴퓨터정보과	주간	120	사진영상과	주간	80
	야간	40			
경영정보과	주간	120	실내건축과	주간	40
	야간	40		야간	40

시각디자인과	주간	80	문예창작과	주간	40
무 역 과	주간	120	환경과학과	주간	80
	야간	40		야간	40
유아교육과	주간	64	자 동 차 과	주간	80
	야간	64		야간	40
의상디자인과	주간	80	간 호 과	주간	40
	야간	40	응용회화과	주간	40
생활과학과	주간	80	정보통신과	주간	80
				야간	40
					계 2,944

①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야간강좌개설 학과를 둘 수 있다.

제 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 제 5조 (수업연한)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단, 건축과, 유아교육과, 간호과는 3년으로 한다.

+ 제 6조 (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 제 7조 (학년)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 일까지로 한다.

+ 제 8조 (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제 1 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 2 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②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학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 9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제 10조 (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2002.3.1삭제>
2. <2002.3.1삭제>
3. 개교기념일 (3월 11일)
4. 일요일
5. 국정 공휴일

② 휴업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필요에 의하여 학장이 이를 정한다. 휴업일 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 4장 입학(편 · 입학, 재입학포함)

+ 제 11조 (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기초로부터 수업일수의 1/4일 이내로 한다.

+ 제 12조 (입학자격)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 13조 (입학지원 절차)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모집 시에 학장이 정하는 소정원서 및 구비서류와 전 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조 (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 중 학장이 정하는 전형방법에 의해 선발한다.
  1.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2. 대학수학능력시험(2002.8.1개정)
  3. 대학별고사
  4. (2002.8.1 삭제)
  5. (2002.8.1 삭제)
  6. (2002.8.1 삭제)
  7. (2002.8.1 삭제)
  8.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형방법(2002.8.1 개정)

②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학전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2002.8.1개정)

제 14조의 2 (입시공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 위원회를 둔다.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학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입시관리위원이 아닌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구성과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 14조의 3 (입시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 심의하기 위하여 입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시관리위원회는 학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입학전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하고, 세부사항은 입시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정한다

제 15조 (입학허가)

입학허가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

제 15조의 2 (이중학적금지)

본 대학의 학생으로서 이중학적을 가질 수 없다.

제 16조 (편입학)

① 전문대학 및 대학 1,2학년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2학년 및 3학년초에 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학생과 휴학 중 폐과된 과의 학생에 대한 편입학은 학기초에도 허가할 수 있다.(2002.8.1 개정)

② 편입학은 각 학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과와 동일한 계열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 16조의 2 (전과)

① 교내전과 (이하 "전과"라 한다)는 제 2학년초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전과는 전학년에 이수한 전과목의 평점 B급 이상인 자로서 전입과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계에 한하여 허가한다.

③ 전과한 자는 소정과목의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이미 취득한 학점은 학장이 인정할 수 있다.

④ 제14조의 제2항에 따라 특별전형으로 입학된 자는 타 과에 전과할 수 없다.

제 17조 (재입학)

① 제적자 및 자퇴자 중 제적일 이후 한 학기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제44조 징계에 의거 퇴학 처분을 받은 자 와 타 전문대학(4년제 대학 포함)에 이중으로 학적 보유한자 및 산업체 위탁생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2002.8. 1 개정)

② (1999.6.11삭제)

③ 재입학은 학기의 수업일수 1/4이내 동일 학과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한다.

제 18조 (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서식에 의거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 5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 19조 (휴학 및 복학)

①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1/4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는 보호자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2002.8.1개정)
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질병휴학 및 병역 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불구하고 휴학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2001.3.1개정)
④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복학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학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 20조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1조 (제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장이 제적한다.(2002.8.1개정)
1. 휴학기간 종료 후 수업일수 1/4선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2002.8.1 삭제)
3.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4.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2001.3.1개정)
5. 타교에 입학한 자
6.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매 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8.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2002.8.1신설)
9. 산업체 위탁생 중 퇴사한 자(2002.8.1신설)
10. 본인 사망(2002.8.1신설)

제 6장 교과 및 수업

제 22조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며, 학점배점기준은 교양교과 10~20%, 전공교과 80~90%로 하고 전공교과의 실험, 실습비율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학과의 특성에 따라 교직교과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2002.8.1개정)
② 전공교과의 이수구분은 따로 정한다.(2002.8.1개정)
③ 현장실습 의무 대상학과의 현장실습은 전공교과의 필수로 한다.(2002.8.1개정)
④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은 졸업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복학 및 학적 변동된 자는 복학 및 신규허가 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때 이수한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2002.8.1신설)

제 23조 (비정규 특별과정 및 전공심화과정운영)

① 본 대학에는 1년 이내 과정의 비정규 특별과정 및 전공심화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2001.3.1개정)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의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③ 비정규 특별과정의 교과이수 단위는 학칙 제24조 제1항에 따른다.
④ 비정규 특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과의 유사한 교과목인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비정규 특별과정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⑥ 전공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졸업 또는 학력 인정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2001.3.1신설)

제 23조의 2 (시간제 학생 등록제 운영)

① 본 대학에서는 대학의 평생교육 기반 구축의 위한 일환으로 일반 사회인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개설된 야간 학과에 시간제 학생 등록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간제 학생 등록제를 위하여 선발하는 인원은 야간계 학과 전체 입학정원의 10%이내, 학과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선발한다. 단, 전문인을 양성하는 간호, 사범계열은 제외한다.
③ 시간제학생 등록제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④ 선발 방법 및 이수학점 등, 기타 시간제 학생 등록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제 24조 (교과 이수단위)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이수시간은 1학기간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2001.3.1개정)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80학점(3년제는 120학점)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양교과와 전공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2002.8.1 개정)
③ 학생은 매 학기 15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 이상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이하를 이수할 수 있다.
④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⑤ 제22조 제3항의 단서에 의한 현장실습 학점은 3학점 이내로 하되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⑥ 본 대학에 입학한 자가 본 대학에 개설된 교양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을 타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학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002.8.1 개정)

+ 제 25조 (수업)

① 매 학기 개설 교과목은 승인된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설한다.(2002.8.1 개정)
② 개설교과목의 주 · 야 강좌개설 시간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2002.8.1 신설)
③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사이버 강의를 개설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2002.8.1 신설)

제 7장 성적평가 및 졸업

+ 제 26조 (평가시험)

① 성적평가는 주관식시험과 객관식시험을 병용하되 그 실시에 관하여는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초과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
시하지 못할 시는 학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2001.3.1개정)
③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

+ 제 27조 (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학습 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0급 이상으로 하되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의무이수교과목의 실험, 실습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한다.

9단계 평점 방법		
등급	배점	평점

A+	100 - 95	4.5
A0	94 - 90	4.0
B+	89 - 85	3.5
B0	84 - 80	3.0
C+	79 - 75	2.5
C0	74 - 70	2.0
D+	69 - 65	1.5
D0	64 - 60	1.0
F	59 이하	0
P		불 계

③ 추가시험성적은 B+급까지, 재시험은 C+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 성적 평가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성적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성적배점 및 분포에 대하여는 학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 28조 (진급인원)

(2001.3.1삭제)

+ 제 29조 (성적의 취소)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는 이를 취소한다.

+ 제 30조 (경고)

성적평가결과 성적이 불량하고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 제 31조 (졸업 및 수료)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4조 제2항의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에게 는 (별지 1호)서식에 의하여 별표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②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2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수료 : 40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80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20학점 이상
③ 학점 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 졸업을 할 수 있다.
④ 1997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제 32조 (유급)

① 소정의 학점 미달자 중 본인이 원할 경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유급 할 수 있다. 그 운영 방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2001.3.1개정)
② (1999.6.11삭제)

제 8장 학생활동

+ 제 33조 (학생회 조직)

① 본 대학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웅지, 창조, 기술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함을 목적으로 본 대학에 학생회를 설치하며 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② 본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이나 퇴학, 휴학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 학생회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 제 34조 (학생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35조 (학생회 이외의 단체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임의의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 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36조 (학생활동의 금지사항)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치적 활동 및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수업거부, 불온게시물의 무단 부착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제 37조 (학생지도)

① 학장은 매 학년 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학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를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한다.

+ 제 38조 (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할 때에는 행사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7일 이전에 학생처 학생지원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교내·외 2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외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사상의뢰
4. 외부 인사의 학내초청

+ 제 39조 (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회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을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학생처에 신고한다.

+ 제 40조 (처벌)

① 본 장의 제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징계할 수 있다.

② 전 1항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 포함된다)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제 9장 규율과 상벌

+ 제 41 조 (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중견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 제 42조 (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시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질병으로 결석이 7일을 초과할 때에는 종합병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 43조 (포상)

학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 44조 (징계)

① 학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무계출 결석이 4주간을 초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 10장 등록금

+ 제 45 조 (등록금)

①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2001.3.1개정)

② (2001.3.1삭제)

③ 납부한 등록금 중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2001.3.1개정)

+ 제 46조 (등록금 면제)

학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보훈자녀 등에 대하여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2001.3.1개정)

TOP

제 11장 장학금

+ 제 47조 (장학금)

① 학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01.3.1개정)
  1. 소정의 학점을 전부 이수한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가정사정이 어려운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국가유공자 및 직계자녀
  4. 학내의 특정 부서에서 일정기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전국규모의 각종대회에서 입상한 자.
  5. 기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자.

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및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TOP

제 12장 교수회

+ 제 48조 (구성)

본 대학에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조직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 제 49조 (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학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 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② 교수회는 학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2. 입학, 진급, 졸업에 관한 사항
  3.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4. (1999.6.11삭제)
  5.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TOP

제 13장 교무위원회

+ 제 50조 (교무위원회 운영)

본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교무위원회의 세부규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 제 51조 (구성)

교무위원회는 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산학협력처장, 총무처장 및 학장이 선임하는 4인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 제 52조 (소집 및 심의)

교무위원회는 학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학사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제 14장 직제

제 53조 (교직원)

본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및 조교 외 교원과 기타 사무직원을 둔다.

제 54조 (직제)

① 본 대학에는 교무처, 학생처, 산학협력처, 총무처와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 각 처에 처장을 보하고 처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각처의 사무분장을 따로 정한다.

제 15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 55조 (부속기관)

① 본 대학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1. 학보사
  2. 도서관
  3. 학생생활연구소
  4. 정보관리소
  5. <삭 제>
  6. 교육방송국
  7. <삭 제>
  8. <삭 제>

②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55조의 2 (부설연구기관)

① 본 대학에는 부설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설연구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5조의 3 (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둔다. 이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치한다.(신설 2004.6.1)
②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4.6.1)

제 16장 보칙

제 56조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2002.8.1 개정)

제 57조 (산업체 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산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중인자를 산업체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2002.8.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 (학칙제정 및 개정의 공고)

① 학칙의 제ㆍ개정은 제ㆍ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2002.8.1 신설)

② 학칙 제ㆍ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0일 이상으로 한다(2002.8.1 신설)

+ 제 59조 (심의절차 및 공포)

제ㆍ개정안은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학장이 공포후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한다.(2002.8.1 신설)

부칙

① 이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업경영과 증원 및 전자계산과 신설)

부칙

① 이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업디자인과 및 경영과 신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제7조, 제22조 및 제24조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유아교육과, 의상과, 가정과, 무역과, 학과 신설, 경영과 증원)

부칙

+ 제 1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84학년도 개시 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은 시행당시의 제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의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4학년도 말까지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소속된 학생으로서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학과의 학생으로 본다.(도안과가 공업디자인과로 변경)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3항 및 제24조 제5항은 1984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졸업자격고사 합격자 처리) 1981학년도 이후 198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자 중 전문대학 전과정을 이수한자 또는 이수예정자로서 졸업정원에서 제외된 자가 전문대학 졸업자격고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시행일) 이 학칙은 198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회조직, 학생회비, 학생회 이외의 단체조직, 학생활동의 금지사항, 학생지도)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학과 및 졸업정원 조정)

부칙

① (졸업정원 감축학과의 졸업정원 적용에 관한 특례) 공업경영과의 1988학년도부터 1991학년도 까지의 졸업정원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40명으로 한다.
② (시행일) 이 학칙은 198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졸업정원을 입학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 한자중 198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16 조, 제16 조의 2, 제27조, 제28조, 제31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 소속변경) 학과가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의 학과 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자는 신설 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할 수 있다.
③ (시행일)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여성교양과, 공업디자인과, 소방안전관리과 신설, 사무자동화과 증원)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9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전기전자재료연구소 신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여성교양과, 유아교육과, 의상과, 전자과, 무역과 야간증원 및 비서과 야간신설
2. 학교명 변경

TOP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0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4조(입학정원) 제6항 신설 (군위탁생의 입학정원은 학장이 시행하는 소정의 방법에 의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사진영상과 야간 80명 학과신설, 상업디자인과, 사무자동화과, 비서과, 소방안전관리과 야간 각 40명 증원)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학과신설 : 실내건축과 야간 80명, 문예창작과 야간 40명
증 원 : 여성교양과 20명 (주간40, 야간 80)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학과신설 : 환경공업과 야간 80명
증 원 : 경영과 야간 40명

부칙

① 이 학칙은 1993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당시 공업디자인과, 상업디자인과의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육과정 등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9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양학점 인정 등에 따른 경과조치) 제24조 제6항은 199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재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학연한 및 재입학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 재입학 횟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졸업증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996학년도 전기졸업자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당시 의상과의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학과개편으로 인한 교원의 경과조치) 이 학칙 당시 의상과의 교원은 개편된 학과의 교원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학과신설 : 응용회화과 주간40명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학과신설 : 생활보육과 주간 40명, 야간80
학과폐지 : 여성교양과 주간 40명, 야간80
③ (학과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여성교양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생활보육과의 해당학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여성교양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생활보육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④ (학과개편으로 인한 교원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여성교양과에 소속된 교원은 개편된 학과의 교원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9조 및 제24조 개정사항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명 변경에 따른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자에 대하여 컴퓨터정보과의 해당학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자계산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컴퓨터정보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학과명 변경에 따른 교원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과에 소속된 교원은 변경된 학과의 교원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 변경에 따른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경영과, 환경공업과, 자동차정비과, 가정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각각 산업경영정보시스템과, 환경응용화학과, 자동차과, 생활과학과의 해당학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변경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변경된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휴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특별전형, 산업체 위탁교육으로 입학한 자가 휴학한 경우 복학시기에 해당야간학과가 폐과 되었을 때는 학칙 제16조의2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동일계열로 전과할 수 있다. 다만, 유아교육과, 간호과로는 전과할 수 없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학과신설 : 네트워크정보과 주간 80명, 야간40
③ (학과 변경에 따른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기과, 토목과, 전자과, 사무자동화과, 환경응용화학과, 경영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각각 전기제어시스템과, 토목환경과, 전자정보 과, e-비즈니스과, 환경과학과, 경영정보과의 해당학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변경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변경된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명 변경에 따른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관리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자에 대하여 소방시스템과의 해당학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방시스템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학과명 변경에 따른 교원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관리과에 소속된 교원은 변경된 학과의 교원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명 변경에 따른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육과, 네트워크정보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학년도 까지 졸업하지 못한자에 대하여 각각 보육과, 정보통신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변경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변경된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학과명 변경에 따른 교원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육과, 네트워크정보과에 소속된 교원은 변경된 학과의 교원으로 본다.

COPYRIGHT(c) KYUNGWON COLLEGE BY ALL RIGHTS RESERVED.